

의안번호	2218626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6.5.14.
추계번호	26E23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세율 조정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발전용,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세율을 20원/kg으로 조정할 경우 개별소비세 수입은 2027년 341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1,666억원(연평균 3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발전용,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세율 조정(제1조제2항)	-341	-338	-334	-329	-325	-1,666	-333
발전용 LNG	1,475	1,506	1,538	1,570	1,603	7,692	1,538
주택 난방용 LNG	-1,816	-1,844	-1,871	-1,899	-1,928	-9,359	-1,87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조제2항(과세대상과 세율)	- 발전용,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세율 변경 (발전용) 12원/kg → 20원/kg (주택 난방용) 60원/kg → 20원/kg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1조제2항(과세대상과 세율)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6년 정기회 중 통과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추계기간을 2027~2031년까지로 설정
-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관련 현행 시행령 규정이 함께 개정된다고 가정
 - 개정안은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대해 60원/kg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외’ 천연가스에 대해 60원/kg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주택 난방용을 높은 기본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현행 시행령은 ‘발전용 외’ 물품에 대해 42원/kg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개정안과 함께 개정되지 않을 경우 발전용 외 물품에 해당하는 ‘주택 난방용’ LNG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준의 탄력세율(42원/kg)을 적용받게 됨
- 향후 추계기간 동안 발전용 LNG에 대한 탄력세율은 2026년 5월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
 - 발전용 LNG 중 수소제조용과 열병합발전용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및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세율(12원/kg)보다 낮은 탄력세율(8.4원/kg) 적용 중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추계대상

-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발전용의 경우 12원/kg, 비 발전용의 경우 60원/kg이며, 시행령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탄력세율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함
- 개정안은 낮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LNG의 종류에 주택 난방용을 추가하는 동시에 기본세율을 20원/kg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으로 조정하여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표 2]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현황: 현행 및 개정안

(단위: 원/kg)

		현 행		개 정 안		실제 세율변화
		기본세율	탄력세율	기본세율	탄력세율	
발전용	수소제조용	12	8.4	20	8.4	×
	열병합발전용					○
	일반 발전용	<u>12</u>	—	<u>20</u>	—	(+8)
비 발전용 (도시가스)	주택 난방용	60	<u>42</u>	<u>20</u>	—	○ (-22)
	기타			60	4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라 발전용 중 수소제조용과 열병합발전용을 제외한 일반 발전용 LNG의 적용세율이 인상되고(12원/kg → 20원/kg), 비 발전용 중 주택 난방용 LNG의 적용세율이 인하됨(42원/kg → 20원/kg)
 - 발전용 중 수소제조용과 열병합발전용은 탄소중립 및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탄력세율(8.4원/kg)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기본세율 인상과 관계 없이 현행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주택 난방용의 경우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42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제
 - 현행 시행령은 발전용 외의 물품에 대해 42원/kg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42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LNG의 범위에서 주택 난방용이 제외되지 않을 경우) 기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42원/kg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
- 따라서 적용세율의 변화가 예상되는 수소제조용과 열병합발전용을 제외한 일반 발전용 LNG와 주택 난방용 LNG를 추계대상으로 설정함

(2) 추계방법

가. 일반 발전용 LNG분 세수효과

-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일반 발전용 LNG분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세율변동분을 곱해 세수효과를 추계함
- 2021~2025년 일반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실적은 다음과 같음
 - 국세청 신고분(내수)의 경우 신고물량 전체에 대해 면세 또는 중간재 투입 등의 사유로 세액이 부과되지 않거나 전액 환급되어 실제 개별소비세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관세청 신고분(수입)에서만 납부실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1,804억 원 등으로 나타남

[표 3] 일반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실적: 2021~2025년

(단위: 백만톤,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세청 신고분 (내수)	물량	35,173	87,954	59,566	20,748	—
	세액	—	—	—	—	—
관세청 신고분 (수입)	물량	—	7	17	19	18
	세액	—	69,944	173,458	191,368	180,431

주: 1. 국세청 신고분의 경우 2025년 통계 부존재(통계 미생성)
 2. 국세청 신고분의 경우 신고물량 전부에 대해 면세 또는 중간재 투입 등의 사유로 세액이 부과되지 않거나 환급되어 납부 실적이 없음
 3. 관세청 신고분은 수입신고 기준임
 자료: 국세청, 관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5년 기준 관세청 신고분 일반 발전용 LNG 물량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2029년 중기 에너지수요전망」에 따른 발전용 천연가스 연평균 증가율(2.1%)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일반 발전용 LNG분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추정치에 세율변동분(8원/kg)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국세청 신고분의 경우 2021~2024년 신고물량 전체가 면세 또는 세액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추정 시 고려하지 않음

[표 4]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일반 발전용
(단위: 천톤,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일반 발전용 LNG분 과세표준(A)	18,440	18,827	19,223	19,626	20,039
세수효과 (A×8원/kg)	1,475	1,506	1,538	1,570	1,603

나. 주택 난방용 LNG분 세수효과

□ 한국가스공사의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판매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주택 난방용 LNG분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세율변동분을 곱해 세수효과를 추계함

- 비 발전용 LNG(도시가스)는 용도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한국가스공사의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판매실적 자료를 활용
 - －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유일의 LNG 도매사업자에 해당
 - － 주택용 도시가스는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를 말함

□ 2021~2025년 한국가스공사의 용도별 도시가스 공급·판매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5]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및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판매실적: 2021~2025년
(단위: 천톤)

	2021	2022	2023	2024	2025
도시가스(A)	19,331	19,832	18,328	18,398	19,008
주택용	8,328	8,728	7,761	7,553	8,014
업무난방용	443	439	375	352	369
일반용	1,518	1,655	1,711	1,743	1,766
냉난방 공조용	534	553	520	539	562
산업용	6,588	6,469	5,841	5,916	5,856
열병합용	299	253	243	223	254
연료전지용	383	470	716	1,010	1,156
열전용설비용	216	294	205	154	174
수송용	788	760	732	692	642
기타	235	212	223	218	214
발전용(B)	17,582	18,565	16,314	15,727	15,506
총계(A+B)	36,913	38,397	34,642	34,125	34,514

자료: 한국가스공사

- 2025년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판매량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2029년 중기 에너지수요전망」에 따른 연평균 건물 부문 도시가스 수요 증가율(1.5%)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주택 난방용 LNG분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추정치에 세율변동분(-22원/kg)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표 6]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주택 난방용
(단위: 천톤,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주택 난방용 LNG분 과세표준(A)	8,257	8,380	8,506	8,634	8,763
세수효과 ($-A \times 22\text{원/kg}$)	-1,816	-1,844	-1,871	-1,899	-1,928

(3) 추계결과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총 세수효과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개정안에 따라 발전용,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세율을 20원/kg으로 조정할 경우 개별소비세 수입은 2027년 341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1,666억원(연평균 3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발전용 LNG에 대한 기본세율 조정에 따라 2027년 1,475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7,692억원(연평균 1,53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
 - 주택 난방용 LNG에 대한 기본세율 조정에 따라 2027년 1,816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9,359억원(연평균 1,87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LNG분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발전용,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 세율 조정(제1조제2항)	-341	-338	-334	-329	-325	-1,666	-333
발전용 LNG분	1,475	1,506	1,538	1,570	1,603	7,692	1,538
주택 난방용 LNG분	-1,816	-1,844	-1,871	-1,899	-1,928	-9,359	-1,87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